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취업제한 장애인관련기관에 아동관련기관 추가〉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180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I. 개요

1.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18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4. 8.
- (3) 회 부 일 : 2026. 4. 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등 의지를 피력하기 어려운 정신적 장애인의 학대 피해가 신체적 장애인의 학대 피해보다 약 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의사소통과 자기방어 능력이 낮은 대상에게 집중된다는 점은 아동학대범죄의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으로까지 확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전과자와 아동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장애인과 아동을 함께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범죄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 및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5호 및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28호까지 신설).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 또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장애인관련기관의 범위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관련 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관련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illegible]

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5.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
기관 및 같은 법 제52조의 아동
복지시설

6. ~ 13. (생략)

<신 설>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 background is white, and the lines are light gray. There are no margins or additional markings on the page.

1. ~ 4. (현행과 같음)

5. -----

-----수행기관, 같은 법 제44
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
탁센터-----

6. ~ 13. (현행과 같음)

1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

<u><신 설></u>	<u>육서비스지정기관</u>
<u><신 설></u>	<u>15.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u> <u>유치원</u>
<u><신 설></u>	<u>16.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u> <u>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u>
<u><신 설></u>	<u>17.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u> <u>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u>
<u><신 설></u>	<u>1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u> <u>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u> <u>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u> <u>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u> <u>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u> <u>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u>
<u><신 설></u>	<u>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u> <u>청소년 보호·재활센터</u>
<u><신 설></u>	<u>20.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u> <u>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u> <u>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u> <u>생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u> <u>기관</u>
<u><신 설></u>	<u>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u> <u>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u> <u>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u> <u>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u> <u>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u> <u>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u> <u>교습소</u>
<u><신 설></u>	<u>2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u> <u>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u>

<u><신 설></u>	23. 「아동복지법」 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u><신 설></u>	2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u><신 설></u>	25.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u><신 설></u>	26.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u><신 설></u>	27.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u><신 설></u>	28.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② ~ ⑬ (생략)	② ~ ⑬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현행법에서는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이러한 취업제한 제도는 장애인의 이용이 잦은 장애인관련기관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자가 근무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장애인의 안전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2012년부터 도입되었음.

- 이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장애인관련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이며,

- 아동과 관련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과 아동복지시설이 해당됨.

1)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이하 각 호 생략)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 장애인관련기관 현황>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제1항 각호

1.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59조의13의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
2.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단체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5.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6.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간호법」 제2조의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32조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활동지원기관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조 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11.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2항의 이동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의 광역이동지원센터

□ 개정안은 이처럼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장애인관련기관의 범위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전력이 있는 자가 아동을 직접 대면하거나 밀접하게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해서도 관련 범죄로부터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법상 취업제한 제도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개정안은 이를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관련기관에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므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아동관련기관 취업까지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과 아동은 모두 자기방어가 어렵고 보호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현행법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에 대한 취업제한과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한 취업제한을 각각 별도의 법률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 장애인관련기관과 아동관련기관 사이의 일부 중첩 가능성, 보호 대상 및 입법 목적의 차이, 취업제한 대상 범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²⁾

□ 한편,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에서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을 전부 반영한 것은 아니며, 이미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시설, 의료기관과

아동에 대한 일상적인 보호·돌봄·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기 어려운 보장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

2) 아동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은 원칙적으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은 장애아동 등과의 접점 가능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에서도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음.

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년분류심사원 등은 제외하였음.

□ 그러나 아동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지원시설, 입양 관련 위탁기관,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 등은 제외하고 있는바,

그 기준이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별 대상기관에 대한 선별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개정안에 의해 추가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관련기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개정안에 의해 추가되는 아동관련기관
제29조의3 각호 1. <u>보장원, 지방자치단체</u>(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제37조에 따른 <u>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u>,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u>긴급전화센터</u>, 같은 법 제5조의 <u>가정폭력 관련 상담소</u>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u>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u>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u>건강가정지원센터</u> 및 제35조의2에 따른 <u>가족센터</u>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u>다문화가족지원센터</u>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u>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u> 및 같은 법 제10조의 <u>성매매피해상담소</u>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u>성폭력피해상담소</u> 및 같은 법 제12조의 <u>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u> 및	개정안 각호 5.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센터 1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15.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16.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7.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보호·재활센터 20.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12.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6.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보호·재활센터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

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2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3. 「아동복지법」 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25.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6.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27.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8.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23.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4.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26.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7.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주1): 볼드·밑줄 표시 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중 개정안에 의해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되지 않는 기관임.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전력이 있는 자를 아동을 직접 대면하거나 밀접하게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여 아동을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함.
- 다만, 현행법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범죄자의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부터 아동관련기관 이용자(아동)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관련기관을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보호법익과 취업제한 적용대상간 불일치가 우려됨.
 - 「노인복지법」은 노인관련기관 주(主) 이용자(노인)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인학대범죄 전력자의 노인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아동복지법」은 아동관련기관 주(主) 이용자(아동)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부터 아동관련기관의 이용자(아동)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 대상 범죄 유형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입법 기술적으로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임.

나.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 개정안의 장애인학대 범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조희체계의 비효율성과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 무고성 신고에 따른 취업제한 확대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502